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8,234,524,102	247,035,722
일 반 회 계	7,399,747,550	221,992,426
특 별 회 계	834,776,552	25,043,296
기 타 특 별 회 계	834,776,552	25,043,296
·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	11,580,000	347,400
·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18,818,865	564,565
·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7,562,243	226,867
·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367,872,270	11,036,168
· 소방특별회계	428,943,174	12,868,29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4,285,325천원으로 하고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5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

제 9 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
교부된 경비는 사전에 의회 서면보고 후 동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해
예산 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 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.